2017년 기획보고서 답안지
개인별 부여번호: 행정8-

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요약 보고

2017. 6.

교 육 부
[유 아 교 유 정 책 과]

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보고(요약)

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공통 교육·보육과정(누리과정)을 도입하고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·보육료 지원

Ⅰ 주요 추진내용

□ 유아학비 지원

○ 지원대상: 국·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**만 3~5세 유아**

○ 지원금액: 유아 **1인 당 6만원~22만원**

○ 지원절차

- 신청: 유아의 보호자*가 자가 주소지 **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**으로 신청
  * 보호자: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- 지원금 지급: 학부모 인증을 거쳐 **매월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입금**
- 학부모 수납: 유치원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

○ 지원기준 및 방법

- **(신규신청)**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
- **(변경신청)**

변경구분	유아학비↔보육료	양육수당→유아학비	유아학비→양육수당
지원방법	유아학비 및 보육료 변경 신청전일까지 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	(15일 이내)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(16일 이후)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	(15일 이내) 유아학비 지원 불가, 양육수당 전액 지급 (16일 이후)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

○ 지원금 산정(매월 1일~말일)

- 산정기준

입학 시	퇴원 시	학기 중
신청일 기준으로, 입학일로부터 입학한 달의 말일까지 산정	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일수 산정	- 교육일수 15일 이상: 전액 지원 - 교육일수 15일 미만: 일할계산

-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

□ 방과후과정비 지원

○ 지원대상: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

○ 지원금액: 유아 **1인 당 5만원~7만원**

○ 지원 항목: 인건비, 교재·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

□ 지방자치단체 누리과정 관련 예산 지원

○ 교부방법: 지자체에서 시·도교육청으로 예산 신청 후, 시·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

○ 교부액: 어린이집에 다니는 **만 3~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**

○ 교부시기: **분기별(3월, 6월, 9월, 12월)** ※ 지자체와 시·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

○ 정산 및 집행잔액: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보고, 집행잔액 및 부족한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

Ⅱ 행정 사항

□ 시·도교육청

○ 만 3~5세 누리과정 **소요예산 전액 확보**

○ **시·도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** 구축·운영

○ 자체 **세부계획 수립 및 상시 지도·점검 체계** 구축·운영

○ 유아학비 지원시스템(e-유치원시스템)에 모든 **대상자 등록**

○ **학부모 홍보**

□ 지방자치단체

○ **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 보육담당 부서의 적극적 협조 요청**

○ **신청 및 통보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**

○ **유아학비 지원 자격 관리** 철저